

# 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17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4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109호, 2022.3.1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m<sup>2</sup>)

	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
5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1,874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1,963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1,900
	60m <sup>2</sup> 초과 ~ 85m <sup>2</sup> 이하	1,829
	85m <sup>2</sup> 초과 ~ 105m <sup>2</sup> 이하	1,873
	105m <sup>2</sup> 초과 ~ 125m <sup>2</sup> 이하	1,856
	125m <sup>2</sup> 초과	1,830

6~10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2,005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2,100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2,033
	60m <sup>2</sup> 초과 ~ 85m <sup>2</sup> 이하	1,957
	85m <sup>2</sup> 초과 ~ 105m <sup>2</sup> 이하	2,005
	105m <sup>2</sup> 초과 ~ 125m <sup>2</sup> 이하	1,986
	125m <sup>2</sup> 초과	1,958
11~15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1,882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1,972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1,908
	60m <sup>2</sup> 초과 ~ 85m <sup>2</sup> 이하	1,837
	85m <sup>2</sup> 초과 ~ 105m <sup>2</sup> 이하	1,882
	105m <sup>2</sup> 초과 ~ 125m <sup>2</sup> 이하	1,864
	125m <sup>2</sup> 초과	1,838
16~25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1,903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1,993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1,929
	60m <sup>2</sup> 초과 ~ 85m <sup>2</sup> 이하	1,857
	85m <sup>2</sup> 초과 ~ 105m <sup>2</sup> 이하	1,902
	105m <sup>2</sup> 초과 ~ 125m <sup>2</sup> 이하	1,885
	125m <sup>2</sup> 초과	1,858
26~30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1,933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2,025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1,960
	60m <sup>2</sup> 초과 ~ 85m <sup>2</sup> 이하	1,887
	85m <sup>2</sup> 초과 ~ 105m <sup>2</sup> 이하	1,933
	105m <sup>2</sup> 초과 ~ 125m <sup>2</sup> 이하	1,915
	125m <sup>2</sup> 초과	1,888
31~35층 이하	40m <sup>2</sup> 이하	1,963
	40m <sup>2</sup> 초과 ~ 50m <sup>2</sup> 이하	2,056
	50m <sup>2</sup> 초과 ~ 60m <sup>2</sup> 이하	1,991
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16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1,96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45
	125㎡ 초과	1,917
36~40층 이하	40㎡ 이하	1,994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089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22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46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1,99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75
	125㎡ 초과	1,947
41~45층 이하	40㎡ 이하	2,021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117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49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72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20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01
	125㎡ 초과	1,973
46~49층 이하	40㎡ 이하	2,083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182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12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33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82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63
	125㎡ 초과	2,034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<sup>2</sup>)

---

지하층건축비  
(지하층면적기준)

---

894

---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1309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(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